##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17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 장철민·김교흥·한창민

이기헌 • 박홍배 • 박정현

이춘석 · 김한규 · 박지원

김태선 · 정준호 · 이수진

조승래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하고,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제조 및 유통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 보호대 등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검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 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교구등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 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이하 "교구등"이라 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 1. 교구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 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 3. 그 밖에 교구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교구등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

④ 그 밖에 교구등의 보고와 검사,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사업자보고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제품"은 "교구등"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14조의2(교구등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사용 되는 교구 등 물품(이하 "교구 등"이라 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교구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 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 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교구등 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 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교구등의 보고와 검사,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사업자 보고의무 등에 관하여 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제품" 은 "교구등"으로 본다.